

2020년도 제1회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제1회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전라남도지사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시험시간

| 채용 방법 | 채용 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 | | 필기 시험과목 | 시험 시간 | |
|------------|-----------|---------|--------|-----|----|----------------------------|--|------------------------------|---|
| | | | 계 | 남 | 여 | 양성 | | | |
| 계 | | 15개 분야 | 530 | 450 | 25 | 55 | | | |
| 공개경쟁 채용 | 지방 소방사 | 소 방 | 345 | 335 | 10 | - |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10:00 11:40 (100분) | |
| 경력경쟁 채용 | 지방 소방사 | 구조 | 40 | 40 | - | - | ◇ 필수(3):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 10:00 ~ 11:00 (60분) | |
| | | 구 급 | 90 | 75 | 15 | - | | | |
| | | 자동차운전 | 15 | - | - | 15 | | | |
| | | 자동차정비 | 2 | - | - | 2 | | | |
| | | 법 무 | 1 | - | - | 1 | | | |
| | | 전 기 | 5 | - | - | 5 | | | |
| | | 화 학 | 10 | - | - | 10 | | | |
| | | 정보통신 | 6 | - | - | 6 | | | |
| | | 회 계 | 2 | - | - | 2 | | | |
| | | 소방 정 | 항해사 | 2 | - | - | | | 2 |
| | | | 기관사 | 2 | - | - | | | 2 |
| | 소방관련학과 | 10 | - | - | 10 | ◇ 필수(3):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 |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단계별 시험일정

|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 | 시 험 일 정 | | | |
|-------------------------------|---|-------------------|---------------------------|---------------|--------------------------|------------|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공개경쟁 채용 · 경력경쟁 채용 | 2020. 2. 26.(수) ~ 3. 3.(화) (09:00~21:00) ※ 취소기간 : 2. 26.(수) ~ 3. 6.(금) | 인터넷 으로만 접 수 | 필기시험 | 3. 18.(수) | 3. 28.(토) | 4. 10.(금) |
| | | | 체력시험 | 4. 10.(금) | 4. 20.(월) ~ 5. 1.(금) | 5. 8.(금) |
| | |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 5. 8.(금) | 5. 13.(수) ~ 5. 22.(금) | 6. 5.(금) |
| | | | 면접시험 | 6. 5.(금) | 6. 10.(수) ~ 6. 23.(화) | 7. 3.(금) |

- ※ 응시원서 접수기간만 접수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도 접수 가능함
- ※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제출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에 공고함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 **【붙임 1】**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제1항(경력경력채용등의 요건 등)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나. 응시연령

| 채용방법 | 계 급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 | | | | | | |
|---|-------|---------------|-------------------------|------|-------|---------------|-------|------|----|----|----|
| 공개경쟁채용 | 지방소방사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79.1.1. ~ 2002.12.31. | | | | | | | | |
| 경력경쟁채용 | 지방소방사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9.1.1. ~ 2000.12.31. | | | | | | | | |
| <p><응시상한 연령 연장>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근무를 마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복무기간</th> <th>1년 미만</th> <th>1년 이상 ~ 2년 미만</th> <th>2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연장기간</td> <td>1세</td> <td>2세</td> <td>3세</td> </tr> </tbody> </table> | | | |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 | | | | | | |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 | | | | | | |

다. 성 별: 양성·남·여 구분 모집

라. 거주지 제한

- ▶ **공개경쟁채용시험: 2020년도 제1회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해당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사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관련학과를 제외한 경력경쟁채용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 ※ 단, 소방분야졸업자분야는 공개경쟁채용분야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함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붙임 2】**

○ 불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붙임 2-2】**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에 의함

바. 자격·면허증, 경력제한

| 채용방법 | 분 야 (계급)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 | | | |
|------------------|--|--|------------------|------------------------------|-----------------|---|------------|--|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지방소방사)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은 최초시험(필기시험) 예정일 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이 발탈됨 | | | | | | |
| 경력경쟁채용 | 구 조 (지방소방사)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0%;">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td> <td>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td> </tr> <tr> <td>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td> <td>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td> </tr> <tr> <td>③ 기타 특수전부대</td> <td>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 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td> </tr> </table> |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 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
|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 | | | | | |
| 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 | | | | | |
|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 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 | | | | | | |
| | 구 급 (지방소방사)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 경력 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경력 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 | | | | | |

| 채용방법 | 분야 (계급)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 경력경쟁 채용 | 구급 (지방소방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 | 자동차운전 (지방소방사) | <p>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참조</p> |
| | 자동차정비 (지방소방사) | <p>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 자동차 정비 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 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 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 법무 (지방소방사) | <p>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경력기준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별표 3> 붙임 10 붙임에 따름</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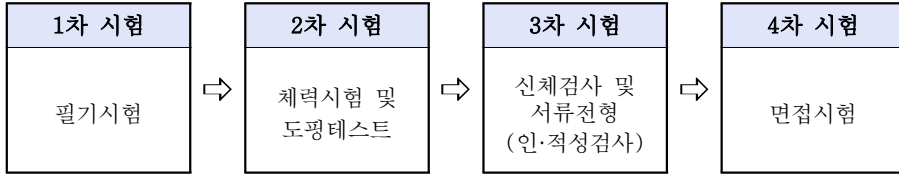
| 채용방법 | 분야 (계급)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 경력경쟁 채용 | 전기 (지방소방사) | <p>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p> <p>1. 전기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 전기관련 자격증: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기능장,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p> <p>2.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p> <p>※ 전기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p> |
| | 화학 (지방소방사) | <p>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p> <p>1. 화학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 화학관련 자격증: 화공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화학분석),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p> <p>2.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 유사학과: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p> <p>※ 화학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p> |
| | 정보통신 (지방소방사) | <p>정보통신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운영, 정보통신), 통신설비기능장,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p> |

| 채용방법 | 분야 (계급)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
| 경력경쟁 채용 | 회 계 (지방소방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경력기준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별표 3> 【붙임 10】 붙임에 따름 |
| | 소방정/ 항해사 (지방소방사) | 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승무경력)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서 증명 되어야 함 |
| | 소방정/ 기관사 (지방소방사) | 4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승무경력)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서 증명 되어야 함 |
| | 소방관련학과 (지방소방사) |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유사학과: 해당 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소방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

사.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1) 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가산특전 등 각종 증명서류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붙임 8】** 참조
- 2)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운전면허증 보유 기준일은 최초시험(필기) 예정일이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자격·면허증 등) 또한 최초시험(필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근무경력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로 함
- 3) 응시요건의 자격·면허증은 기준일 당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채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 중 응시요건으로서의 자격·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박탈됨
- 4)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의 근무기간(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 명시)·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5) 경력확인을 위한 공적서류
 -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③ 폐업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붙임 8-2】**와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6)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2년 인정(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7)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붙임 8-4】**를 제출해야 함
- 8)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9)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10)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4 시험방법



-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 서류전형에 한하여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 모든 분야는 응시원서 접수기간(20.2.26.~3.3.)에만 접수할 수 있음/ P.12 참고

가.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1)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함(필기시험 문제 공개)
- 2) 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 1선택형, 100점 만점
- 3)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5과목): 10:00 ~ 11:40(100분)
 - 경력경쟁채용시험(3과목): 10:00 ~ 11:00(60분)
- 4)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에 다음의 배수를 곱한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채용분야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 1.5배수 | 2배수 | 3배수 |
|--|----------|----------------------------|
| 소방(남,여), 구조, 구급(남,여), 자동차운전, 화학, 소방관련학과 | 전기, 정보통신 | 자동차정비, 법무, 회계, 향해사, 기관사 |

- 5)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6)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 점수를 적용 **【붙임 6】** 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제1항 <별표7>)

7)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

| 구 분 | | 과 목 |
|--|--------|--|
| 공개경쟁채용 | | 필수(3) : 국어, 한국어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¹⁾ 사회, 과학, 수학 |
| 경력 경쟁 채용 | 구조분야 등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
| | 소방관련학과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²⁾ |
| ◆ 선택과목 출제범위 • 수학 :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수학 • 사회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 【붙임 4】 • 소방관계법규 ¹⁾ 공채 :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법(약칭)·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²⁾ 경채 : 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약칭)(법, 시행령) | | |

- 8) 필기시험문제 등 공개
 - 공개일시: 2020. 3. 28.(토) 14:00
 - 공개장소: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
 - 공개내용: 필기시험 문제지(공채, 경채), 가답안(공채, 경채)
- 9) 필기시험 출제문제 이의제기 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20. 3. 28.(토) 11:40 ~ 3. 29.(일) 24:00 / 2일간
 - 신청방법: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 신청
 - 신청절차: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첨부*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붙임 5】** 작성 첨부
 - 주요내용: 필기시험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가답안 이의제기 등 질의
※ 출제문제 이의제기는 인터넷 신청으로만 접수하며, 전화로는 이의제기 신청 불가함

나. 제2차 시험: 체력시험(각 종목별 10점 만점) 및 도핑테스트

- 1) 시험종목 : 6종목 **【붙임 7】**
※ 약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2) 측정방법 : **【붙임 7-2】**
- 3)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퍼센트(3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4)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응시자 건강보호를 위한 무작위 도핑테스트 실시함(5~10% 이내)

- 5) 도평테스트 안내문 : **【붙임 7-3】** 참고
- 6)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 7-4】** 참고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평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7) 도평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 신체검사(인·적성검사 포함) 및 서류전형

-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붙임 2-3】**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불합격을 결정(필요시 정밀 검사 또는 재검사 실시)하며, 수수료는 응시자가 부담함
- 2) 합격자 결정
 - 합격 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붙임 2】**
 - 불합격 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2-2】**
- 3) 인·적성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 지정일에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며, 그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 서류전형 안내

- 관련 서류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 가산특전,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라.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1)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함
- 2) 1·2단계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함(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면접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따름

5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 구급분야(남·여)는 각 선발 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채용인원을 고려하여 동일분야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 2) 접수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
 -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이트(☎ 1522-0660)로 문의 바랍니다.
- 3) 응시수수료: 지방소방사 5,000원
 - 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4) 응시원서 사진 제출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3.5cm(가로)×4.5cm(세로), 해상도 100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유료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최종합격 후 동일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1) 전라남도(전라남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2)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단, 자격증 등 가산특전과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 3)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4) 자격, 면허, 경력,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심사(서류전형)를 실시함
- 5)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매 시험마다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모집단위별로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함
 -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 선택하여야 함

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 분야)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 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1% ~ 5%
 - 필기시험 매 과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 ※가산 대상자 및 비율표 【붙임 3, 3-2】 참고
-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함(필기시험 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함
 - ※ 가산자격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 2)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서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함
 -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바.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고,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 수정테이프는 수험생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출제하며 필기시험 전 과목은 공개함
- 아.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공고, 응시자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되지 아니함

카.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시험관련: ☎061-286-3371~6) 및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061-286-0724~6)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 안내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지합니다.

| | |
|---|-----------|
| 1 | 응시결격 사유 등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원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 2. 제60조(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등록의무자 :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 부분별 | 합격기준 |
|--------|---|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2-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 구 분 | 내 용 |
|-----------------------------|--|
| 1. 일반 결함 |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 지 아니한 사람 |
|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 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 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 3. 치아 계통 |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
|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
|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 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
|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 구 분 | 내 용 |
|---------------|--|
| 7. 생식비뇨기계통 |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
| 8. 내분비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
|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 10. 신경계통 |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 구 분 | 내 용 |
|----------|---|
| 11. 사지 |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
| 12. 귀 |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
| 13. 눈 | 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14. 정신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
| 15. 혈압 |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
| 16. 운동신경 |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2-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1)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 | | | |
|------|------|----|------|
| 수험번호 | 응시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

검 사 내 용

| | | | | | | |
|----|----|---------|----|----------|----|-------|
| 신 | 장 | cm | | 체 | 중 | kg |
| | | | | 혈 | 압 | |
| 시력 | 맨눈 | 좌: 우: | 색신 | 청력 | 정상 | 좌: 우: |
| | 교정 | 좌: 우: | | | 교정 | 좌: 우: |
| 안 | | 질 환 | | 이비인후질환 | | |
| 치 | | 아 | | 호흡기질환 | | |
| 간 | | 질 환 | | 신경질환 | | |
| 소 | | 화 기 질 환 | | 피부질환 | | |
| 순 | | 환 기 질 환 | | 정신질환 | | |
| 비 | | 뇨 기 질 환 | | 혈청검사(매독) | | |
| 흉부 | | X선 검사 | | 기 타 | | |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 검 사 결 과 | [] 합 격 |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
| 합 격 여 부 | [] 불 합 격 | |
| | [] 판 정 보 류 | |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 연번 | 병원명 | 시도 | 주소 | 전화번호 |
|----|--------------------------|----|--|--------------|
| 1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 02-2276-7155 |
| 2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서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전문건설회관 15층 국가건강검진센터 | 1577-0075 |
| 3 | 국립경찰병원 | 서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3층 건강증진센터 | 02-3400-1365 |
| 4 | 구포성심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6 (구포동) | 051-330-3996 |
| 5 | 대동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명륜동) | 051-550-9300 |
| 6 | 동래봉생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 051-520-5537 |
| 7 | 동아대학교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 051-240-5310 |
| 8 | 부산광역시의료원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 051-607-2179 |
| 9 |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 051-240-7830 |
| 10 |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 부산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 051-933-7672 |
| 11 | 영도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 051-419-7757 |
| 12 |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96 (온천동) | 051-590-3384 |
| 13 |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 051-610-9865 |
| 14 |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 051-330-3026 |
| 15 |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 051-602-8137 |
| 16 |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목기념봉생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 051-664-4054 |
| 17 | 재단법인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좌천동) | 051-630-0421 |
| 18 | 학교법인 춘해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 051-608-0271 |
| 19 | 학교법인동의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 051-850-8763 |
| 2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 051-601-6141 |

| 연번 | 병원명 | 시도 | 주소 | 전화번호 |
|----|-------------------|----|----------------------------|-----------------------|
| 21 | 해동병원 | 부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 051-410-6700 |
| 22 | 경북대학교병원 |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 2가) | 053-200-5791 |
| 23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 대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 053-258-4171 |
| 24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대구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 053-650-3434 |
| 25 | 대구의료원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 053-560-7387 |
| 26 | 대구파티마병원 | 대구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 053-940-7025 |
| 27 | 영남대학교병원 | 대구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 053-620-3180 |
| 28 | 인천광역시의료원 | 인천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 032-580-6033~4 |
| 29 | 광주보훈병원 | 광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 062-602-6114 |
| 30 | 충남대학교병원(국가건강검진센터) |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 042-280-8536~7 |
| 31 | 대청병원 | 대전 | 대전광역시 서부 계백로 1322 (정림동) | 042-589-6553~4 |
| 32 | 동강병원 | 울산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 052-241-1114 |
| 33 | 중앙병원 | 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80번길 10 (신정동) | 052-226-1100 |
| 34 | 아주대병원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 1688-2118, 2번선택 |
| 35 | 동수원병원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 031-210-0285 |
| 36 | 의정부백병원 | 경기 |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 031-843-8383 |
| 37 | 강릉아산병원 | 강원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 033-610-3698 |
| 38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 033-258-2313 |
| 39 | 삼척의료원 | 강원 |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 (남양동) | 033-570-7418 |
| 40 |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 강원 |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 033-741-1670~2 |
| 41 | 청주의료원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 043-279-0114, 2번선택 |
| 42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충남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삼룡동) | 041-570-7200 |

| 연번 | 병원명 | 시도 | 주소 | 전화번호 |
|----|--------------------|----|-----------------------------|--------------|
| 43 |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 충남 | 충청남도 공주시 무녕로 77 (웅진동) | 041-962-1111 |
| 44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 충남 |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 041-689-7000 |
| 45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충남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041-630-6114 |
| 46 | 전북대학교병원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 063-250-1295 |
| 47 | 예수병원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 | 063-230-1515 |
| 48 | 대자인병원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 063-250-8770 |
| 49 | 익산병원 | 전북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 063-840-9120 |
| 50 | 동군산병원 | 전북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 063-440-0370 |
| 51 | 정읍아산병원 | 전북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 063-530-6140 |
| 52 | 남원의료원 | 전북 |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 063-620-1152 |
| 53 | 목포시의료원 | 전남 |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 061-260-6500 |
| 54 | 니주종합병원 | 전남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 061-330-6114 |
| 55 | 성가롤로병원 | 전남 |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 061-720-2000 |
| 56 | 여천전남병원 | 전남 |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 061-690-6000 |
| 57 | 안동의료원 | 경북 |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 054-850-6000 |
| 58 |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 경북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 054-468-9114 |
| 59 | 포항세명기독병원 | 경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 054-275-0005 |
| 60 | 김천의료원 | 경북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 054-432-8901 |
| 61 | 의료법인 거봉 백병원 | 경남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상동동) | 055-733-0000 |
| 62 |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 경남 |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16 (두모동) | 055-680-8114 |
| 63 | 의료법인 성녀의료재단 맑은샘병원 | 경남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 055-731-1240 |
| 64 |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장유병원 | 경남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 055-310-6000 |

| 연번 | 병원명 | 시도 | 주소 | 전화번호 |
|----|---------------------------|----|------------------------------|--------------|
| 65 |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 경남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 055-330-6000 |
| 66 | 강일병원 | 경남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59 (구산동, 강일병원) | 055-822-0100 |
| 67 | 의료법인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 경남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 055-330-0300 |
| 68 | 베테스다병원 | 경남 |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 055-384-9901 |
| 69 | 웅상중앙병원 | 경남 |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59 (명동) | 1600-7582 |
| 70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남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 055-360-1000 |
| 71 | 제일병원 | 경남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 055-750-7123 |
| 72 | 진주고려병원 | 경남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 (칠암동, 진주고려병원) | 055-751-2500 |
| 73 | 한일병원 | 경남 |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충무공동) | 055-759-7777 |
| 74 | 경상대학교병원 | 경남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 055-750-8000 |
| 75 | 창원파티마병원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 055-270-1052 |
| 76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 055-214-2050 |
| 77 | 한마음창원병원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 055-268-7898 |
| 78 | 삼성창원병원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 055-233-6012 |
| 79 | 에스엠지연세병원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 055-240-7542 |
| 80 |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 055-249-1241 |
| 81 | 연세에스병원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 055-548-7794 |
| 82 | 제주한라병원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 064-740-5359 |
| 83 | 중앙병원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 064-786-7282 |
| 84 | 한마음병원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 | 064-750-9000 |
| 85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 064-717-1580 |
| 86 | 서귀포의료원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 064-730-3000 |
| 87 | 한국병원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 064-750-0701 |

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 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가점점수 및 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각 과목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 ◆ 각 과목별 만점의 5%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3호, 제5호

- 적용범위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 산정 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처, 민원24)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가점 불인정)
-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2. 의사상자

- 기준일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한함
- 가점점수 및 대상자 : 만점의 3% 또는 5%

- ◆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
- ◆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적용범위 :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 산정 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 044-202-3258)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3.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 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 가점 잘못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

3-2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

| 가점비율 분야 | 5퍼센트 | 3퍼센트 | 1퍼센트 |
|-----------|---|--|--|
| 자격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
| 사무 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유의사항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각 분야 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 ※ **자격증 + 사무관리 = 합산, 0.5할(5%) 초과시 0.5할(5%)만 가점 인정**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각각 가점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점수 가산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최종합격(발급)되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자격증(면허증) 합격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별표2)

| 직무분야 (28) | 중력부분야 (61) | 기술·기능 분야(510) | | | | | |
|-----------------|----------------------------|-----------------|----------------|------------------|------------------|---|-----------------------------|
| | | 기술사 | | 기능장 | | 기능사 | |
| | | 5퍼센트 | 3퍼센트 | 1퍼센트 | 1퍼센트 | | |
| 14 건설 (6/98) | 141 건축 (29)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 | 건축 | 건축 | 거주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 |
| | | |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건축목공 | |
| | |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 | |
| | | 건축품질시험 | | | | | |
| | | | | 실내건축 | 실내건축 | 도배 미장 방수 비계 | |
| | | | | | |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 |
| | | | | | | 전산응용건축제도 조각 철근 타일 | |
| | | | | | | 양화장지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물러운전 볼도저운전 원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 |
| | | | | | | | |
| | | | | | | | |
| 16 기계 (7/79) | 162 기계장비설비 · 설치 (31) | 건설기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 |
|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 |
| | | 산업기계설비 |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
| | | | | 동업기계 | 동업기계 | 동기계정비 생산자동화 | |
| | | | | | | 반도체장비유지보수 타워크레인설치·해체 | |
| | | 163 철도 (5) | 철도차량 | 철도차량정비 | 철도차량 | 철도차량 |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채진조 |
| | | 164 조선 (6) | 조선 | 조선 | 조선 | 조선 | 조선 항공 |
| | | 165 항공 (8) | 항공기관 | 항공 | 항공 | 항공 | 항공기관정비 항공기계정비 항공전자정비 |
| | | 166 자동차 (8) | 자동차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부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
| | | 18 화학 (2/12) | 181 화공 (9) | 화공 | 정밀화학 화공 | 정밀화학 화공 | 정밀화학 화공 |
| 182 위험물(3)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

| 직무분야 (28) | 중력부분야 (61) | 기술·기능 분야(510) | | | | | | |
|---------------------|--------------------|----------------------|------------------|---------------------------------|---------------------------------|--|----------------------------------|---|
| | | 기술사 | | 기능장 | | 기능사 | | |
| | | 5퍼센트 | 3퍼센트 | 1퍼센트 | 1퍼센트 | | | |
| 20 전기·전자 (2/39) | 201 전기 (16) | 건축전기설비 발출배전 | | 전기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 |
| | |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 | 전기 | 전기 |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 | |
| | | | | 광학 | 광학 | 광학 광학기기 | | |
| | | | |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 | |
| | | 산업계측제어 | | 의공 | 의공 | 의공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 | |
| | | | | 전자기기 | 전자기기 | 전자기기 전자 임베디드 | | |
| | | 전자응용 | | | |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응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정보통신 (3/31) | 211 정보기술 (15) | 정보관리 | |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 | |
| | | 컴퓨터시스템응용 |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 | |
| | | 212 방송·무선 (6)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정보통신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 | |
| | | 213 통신 (10)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정보통신 통신신호 통신설비 통신설비 | | |
| | | 25 안전관리 (2/42) | 251 안전관리 (27) |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 | 가스 건설안전 | 가스 건설안전 | 가스 건설안전 |
| | | | | 산업위생관리 소방 | |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
| | | | |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장안전 | |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
| | | | | | |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
| | | | | | |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
| | | | | 252 비파괴검사 (15) | 비파괴검사 | 비파괴검사 | 비파괴검사 | 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극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28 환경·에너지 (2/37) | 282 에너지·기상 (13) | | |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 | 기상 기상감정 | 기상 기상감정 | 기상 기상감정 |
| | | | | 원자력발전 | | 원자력 | 원자력 | 원자력 |
| | | | | |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 | | | | | | |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 | | | | |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 |
| | | | | |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 |
| | | | | |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 |
| | | | | |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 |
| | | | | |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 |
| | | | | |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 |

| | |
|----------|---|
| 4 | 소방학개론의 범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
|----------|---|

| 분 야 | | 내 용 |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
| | 2) 소방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치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 | 2) 연기 및 화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 분 야 | | 내 용 |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 | 2) 건물화재의 성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 4) 화재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 | 2) 소화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 3) 소방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5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거서**

| | |
|-------------|---|
| 성명 | |
| 연락처 | • 휴대폰전화 : • 이메일 : |
| 응시분야 | • 2020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
| 질의과목 | • 해당과목 : 000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6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비고

-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표7)

|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7-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

| 종목 | 측정방법 등 |
|--------------------------------|---|
| 악력 (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체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 배근력 (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골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는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 종 목 | 측 정 방 법 등 |
|-------------------------|---|
| 제자리 멀리뛰기 (c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관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7-3

도핑테스트 안내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7-4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4. 마약류 : 총 11종

| | | |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 |

□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7-5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 | |
|----------------|--|
| 1. 성명: _____ |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
| 3. 생년월일: _____ | 4. 응시번호: _____ |
| 5. 핸드폰: _____ | 6. 이메일: _____ |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 금지약물 | 1회 사용량 | 사용방법 | 사용빈도 |
|------|--------|------|------|
| 1. | | | |
| 2. | | | |
| 3. | | | |

| | |
|--------------------------------|--|
|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8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경력분야)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 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등) 제3항 제5호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8-2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 | | | | | |
|---------|---------|-----------|-----|-------------------------------------|-------|
| 성 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 000000-0000000 | |
| 근 무 경 력 | 사업체명 | 해산(폐업) 연도 | 직 위 | 재 직 기 간 | 담당업무 |
| | (주)○○병원 | 2017 | 주 입 | 95.05.01. ~ 97.12.01. (2 년 8 월) | 응급구조사 |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임 :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1부.

8-3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 | | | | | |
|---|--------|---------|-----|--------------|---------------------------|------------|
| 기관현황 | 회사명 | | | | 대표자 성명 | |
| | 소재지 | | | | | |
|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한글) | | | | 생년월일 | |
| 경력사항 | 근무기관 | 근무부서 | 직 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근무 형태 |
| | | | | (예시) | 2010.12.25. ~ 2012.12.22. | 상근 |
| | | | | (예시) | 2013.01.01. ~ 2013.12.31. | 비상근 주 20시간 |
| | | | | (예시) | 2014.01.01. ~ 2014.12.05. | 시간제 주 10시간 |
| | 총 근무기간 | | | | | |
| 징계사항 | | | | | |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확 인 자 1 | | 확 인 자 2 | | | | |
| 성 명 | | 성 명 | | | | |
| 연락처 | | 연락처 | | | | |
| 서 명 | | 서 명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_____ 사 (직인) | | |
| 해당시도지사 귀하 | | | | | | |
|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8-4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 | | | |
|-----|-----|--------|----|-------|
| 주 소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학 력 | 대학교 | 대학(학부) | 학과 | 년도 졸업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년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 ○ (전화 : -)

2020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해당시도의 장 귀하

9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5)

I. 평가요소 등

○ 면접시험의 평가 요소 및 각 요소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
| 1단계 (집단면접) |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 |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개별면접) |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 |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 인성 또는 적성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II.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⁰,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 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계급환산 기준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3)

계급 환산 기준표

| 구분 계급 | 국가·지방공 무원 또는 별 정직공무원 | 경 찰 공무원 | 군 인 | 교육공무원 | | | 정부관리 기업체 |
|-------------------|----------------------------|------------|-------------------|---------------------|--------------|--------------|-----------------------|
| | | | | 초·중 ·고등학 교교 원 | 전문대학 | 4년제 대학교원 | |
| 소방령 지 방 소방령 | 5급 | | 소 령 | 18~23 호 봉 | 13~18 호 봉 | 11~16 호 봉 | 과 장 차 장 |
| 소방경 지 방 소방경 | 6급 (3년이상) | | 대 위 | 14~17 호 봉 | 11~12 호 봉 | 9~10 호 봉 | 계 장, 대 리 (3년이상) |
| 소방위 지 방 소방위 | 6급 | 경 위 | 중위· 소위· 준 위 | 11~13 호 봉 | 9~10 호 봉 | 7~8 호 봉 | 계 장, 대 리 |
| 소방장 지 방 소방장 | 7급 | 경 사 | 상 사 | 9~10 호 봉 | 8호봉 이 하 | 6호봉 이 하 | 평 사 원 (3년이상) |
| 소방교 지 방 소방교 | 8급 | 경 장 | 중 사 | 4~8 호 봉 | | | 평 사 원 |
| 소방사 지 방 소방사 | 9급 | 순 경 | 하 사 (병) | 3호봉 이 하 | | | 평 사 원 |

비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등한다.
2. 교육공무원란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